

보도참고자료



2019년 2월 15일(금) 08:30 배포 2월 15일(금) 11:30부터 보도 가능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 정창욱(044-200-4842)/사무관 박민영(044-200-4850)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손영채(02-2100-2680)/사무관 장원석(02-2100-2682)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장 이관재(02-3145-8100)/팀장 민경찬(02-3145-8475)

공정위·금융위·금감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위탁업무 범위, 업무처리 절차, 책임 소재 등 규정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중구 금융위원장, 윤석현 금융감독원장은 2월 15일(금) 공정위의 공정거래법상 공시업무의 원활한 수행,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력증진을 위하여 업무협약서에 서명하였다.

< 업무협약 체결식 개요 >

- 일시·장소 : 2019년 2월 15일(금) 11:30, 금융감독원 11층 소회의실
- 참석자 :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관계자
- 주요내용 : 위탁업무의 근거와 범위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 소재 규정, 공시자료에 대한 정보공유 등

- (추진배경) 현재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대규모내부거래(공정거래법 제11조의2), 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정거래법 제11조의3) 및 기업집단현황(공정거래법 제11의4) 등에 대한 공시업무를 금융위에 위탁하고 있고,
 - 공시의무가 있는 회사들은 금감원의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여 관련사항을 공시하고 있다.
 - 이러한 업무체계는 공정거래법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가 도입('00. 4. 1.)된 후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05. 4. 1.), 기업집단현황 공시('09. 7. 8.) 등이 추가되어 '18년말 기준 연간 약 19천 건이 DART를 통해 처리되고 있다.
 - 한편 공정거래법 개정 시 해외계열사 현황 공시까지 포함될 예정 이어서 DART를 통해 처리하게 될 공정위 공시 관련 자료의 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 협력 확대 필요성에 발 맞춰, 경쟁 당국과 금융당국 간 협력체계를 더욱 구축·발전시켜 나가고,
 - 전문성과 책임성을 살리면서 공시업무의 차질 없는 수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여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게 되었다.

- (협약 내용) 이 날 체결된 업무협약에는 ▲공정위가 위탁하는 위탁업무의 범위와 그 처리절차의 명확화, ▲전산장애 등 발생 시 조치 및 책임소재, ▲공시자료 활용도 제고를 위한 공시 관련 자료 공유 등의 내용이 담겼다.

< 업무협약 주요 내용 >

- ① (위탁업무 범위 및 절차) 공정거래법 제11조의2부터 제11조의4까지의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에 관한 공시와 관련된 서류의 접수, 전산사무의 처리 및 전산시스템의 관리업무를 위탁하며 추가변경이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서를 개정토록 함
- ② (전산장애 발생 시 조치 관련) 전산장애 발생 시 금감원은 해당 사실을 즉시 공정위와 금융위에 통보하고, 전산시스템을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 즉시 기업이 제출한 공시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도록 함. 한편, 공정위는 장애사실을 통보받은 즉시 공시서류 제출인에게 공시자료를 전자파일 형태로 공정위와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통보함
- ③ (정보공유) 소관 공시자료 등에 대한 활용도 제고, 공시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정보 공유

- (의의) 이번 업무협약 체결에 더불어 공정위와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개선을 위해 2015년 체결한 기관 간 MOU(참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 앞으로 기업 공시분야에도 기관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복공시 등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해 나갈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 (기대효과) 이번 업무협약을 기반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 간에 자료 연계 등 협업체계가 원활히 작동되면, 기업 현황의 입체적 분석으로 시장에 양질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공시자료를 통한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징후 포착에도 활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나아가, 이번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공정위와 금융당국간의 협업 범위를 확대해나감으로써 나날이 복잡·다변화하는 각종 불공정거래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해나갈 예정이다.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 : www.ftc.go.kr, 금융위원회 : www.fsc.go.kr, 금융감독원 : www.fss.or.kr)

참고

금융위 - 공정위간 MOU 주요 내용('15.1.9.)

구 분	주요 내용
1. 기업결합	금융위는 금융회사 합병과 자회사 편입 등의 경쟁 제한 여부에 대하여 공정위와 협의하고 공정위는 이를 심사함
2. 부당 공동행위	<p>공정위는 금융회사의 금리·수수료 등의 부당공동행위를 규율하며 금융위는 금융회사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음</p> <p>금융위는 행정지도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p> <p>금융위는 행정지도 관련하여 필요시 공정위와 사전협의하고 공정위는 금융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속히 답변해야함</p> <p>공정위는 행정지도 범위 내 개별적 행위에 대해 조치하지 않음</p> <p>공정위는 부당공동행위 협의 심사시 금융위 의견을 최대한 고려</p> <p>공정위는 행정지도가 있는 경우 과징금 감경을 적극 고려</p>
3. 불공정 거래행위	<p>양 기관은 소관법령에 따라 각기 필요한 조사·조치를 할 수 있음</p> <p>양 기관은 중복조치에 따른 부담 최소화를 위해 타 기관의 조치 내용이나 수준이 충분한 경우 별도의 조치나 제재를 하지 않음</p> <p>타기관의 조치가 미흡한 경우, 소관법령에 따라 조치·제재하고 조사보고서 등에 타 기관의 조치내용을 반드시 기재</p> <p>타 기관이 금전 제재시 해당 기관은 이를 감안하여 과징금 등 산정</p>
4. 부당 표시광고	양 기관은 금융회사의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해 조사·조치함
5. 약관	양 기관은 금융회사 약관에 대해 심사·조치할 수 있음
6. 공동연구	양 기관은 효과적인 규제체계의 개편방안 및 향후 정책방향 등에 대해 공동으로 연구하고 법령 제·개정시 반영
7. 실무협의 기구 운영	<p>양 기관은 MOU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협의 및 중복규제 관련 제도개선 논의를 위하여 실무협의기구를 구성</p> <p>실무협의기구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논의안건 등은 양 기관의 협의하여 정함</p>